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의한 해고인지

Q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례해고 사유

A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상기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Q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A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임의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의해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이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통상적인 해고에 해당될 것이며, 다만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682-3)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임회하여 증설 용량에 대해 송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별고압 수전설비를 증설할 경우에는 증설 계약전력 매 1MW에 대하여 13,000원(가공공급) 또는 33,000원(지중공급)을 고객부담금사비로 한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Q 계기용변성기(MOF)는 왜 교체하나요?

A MOF(Metering OutFit)란 계기용 변압변류기이며 특별고압을 계량 가능한 전압과 전류로 변성시키는 장치로써 사용전력량을 산정하여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며, 절연유가 짙은 황색 또는 흑색을 띠거나 외함에 기름(절연유)이 흐른 흔적이 발견된다면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못하므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전용 변압기를 상위 용량으로 교체하는 등 전력설비를 증설할 경우 증설 후의 설비용량이 증설 전 설비용량의 120% 이내이면 기존의 MOF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1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위 용량의 MOF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MOF를 교체할 경우에

는 교체시공할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교체일 2일 이전에 한전에 통보하여 MOF 교체담당에는 한전 직원의 임회하여 송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Q 수전설비 증설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전용 변압기 등을 현재보다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여 한전과의 계약전력을 증설코자 하실 경우에는 수전설비를 증설 시공할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한전에 전기사용 증설 신청을 하셔야 하며, 수전설비 교체 후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점검을 요청하고 사용전 점검필증을 한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송전 요청일 2일 이전에 한전에 통보하여 한전 직원의

Q 수전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MOF를 무단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 후 증거확보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며, MOF 배수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 변경으로 인한 전력사용 면탈량을 포함한 2배수의 위약금을 한전에서 고객님께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변압기 등 수전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한 경우에는 무단증설을 포함한 총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과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한전에서 청구하게 되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조기관절염과장 민도식



도 일정 기간은 통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현재 약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품질이나 정확한 함량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황산 콘드로이틴, SAM-e, MSM, Pentosan polysulfate 등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적은 지식이었지만 '지피(知彼)'에 도움이 되었을 바라며, 어차피 동행해야 할 질병이라면 함께 해도 좋을 만큼 잘 다스릴 수 있는 벗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031-539-9150)

Q '글루코사민'이 무엇인가요?

A 요즘 들어 환자들에게서 '글루코사민'에 대해 질문을 받는 횟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글루코사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세포나 그 생산물을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며 연골 대사과정을 정상화하고 연골 물질을 생성, 보호,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근

본적으로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물질이지만 그간 진행된 조사(Arch Intern med 2002;162:2113-23, Menopause 2004;11(2):138-43)에 의하면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나 관절의 퇴행성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며 외부 투여에 의해 연골 손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통증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기에 '글루코사민'을 투여해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Q 저는 3년 전 甲·乙과 공동으로 내대지 1필지를 구입하여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위 대지 위에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대지를 분할할 수는 없는지요?

A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 269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공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의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환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은 방법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3.12.7. 93다27819).

공유물을 대공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치가 감소된다'고 함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고 현물분할에 의하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공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1.19. 92다30603).

그러므로 귀하는 甲·乙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희롱법 제정 10년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성희롱에 대한 반감과 남녀 인식의 차이는 더욱 커져가고 있는 듯하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남녀의 인식의 차이에서 남성들은 '우리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과 여성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인 인식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성희롱에 대한 반감과 남녀 인식의 차이는 더욱 커져가고 있는 듯하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남녀의 인식의 차이에서 남성들은 '우리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과 여성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 방영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학점을 받자한 대학 강사에 의한 성희롱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해당 학교의 신속한 대응으로 일단락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을 거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실정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335개의 대학에 성희롱 전담창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는 하지만 이러한 전담창구나 위원회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전담기구와 위원회의 역할 강화, 성폭력과 성희롱 근절에 대한 각 대학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대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자인 경우 당해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초과여부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A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 2주택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세대 2주택 초과세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도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상속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러한 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일지라도 초과세를 받지 않고 일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초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인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고객님의 소중한 물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

화물·이삿짐·지방·시내 화물 운송

크레인은 언제나 송우 크레인



보유 차량 1톤·1.4톤·3.5톤·4.5톤 다양한 차량 보유

송우화물이삿짐센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39-6 Tel. 031) 542-2424, 541-1234 Fax. 031) 543-7000 H.P. 011-248-7746 (임귀선)

